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14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1874	이병진의원	2024.7.17.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9.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2024.9.9.), 제2차(2024.9.19.) 법안심사소위 상정·심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330	김남희의원	2024.8.2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2024.9.9.), 제2차(2024.9.19.) 법 안심사소위 상정·심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467	이달희의원	2024.8.3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2024.9.9.), 제2차(2024.9.19.) 법 안심사소위 상정·심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477	강유정의원	2024.9.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9.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2024.9.9.), 제2차(2024.9.19.) 법 안심사소위 상정·심사

아동 • 청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성보호에	2202544	고수취하이	2024 0.2	(2024.9.6.)
관한 법률	2203544	조은희의원	2024.9.2.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일부개정법				(2024.9.9.), 제2차(2024.9.19.) 법
률안				안심사소위 상정·심사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23.)는 위 5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2024. 9. 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제도가 사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야간 ·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11조의2 신설).
 -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 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 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 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5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

- 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 8(종전의 제25조의7)제1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한다.
-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해아동·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의7"을 "제25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제3호·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가
제8조의2, <u>제9조부터 제15조</u>	<u>제9조부터 제11조까</u>
<u>까지</u> 및 제15조의2의 죄	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나.~라. (생 략)	나.~라.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3
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u>제11</u>
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u>15조까지</u>
죄를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	6
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u>제9</u>	제9조부터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
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조부터 제15조까지

• 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9. (생략) <신 설>

<신 설>

7.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 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다.
-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 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 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 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위장수사)(생략)

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 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 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 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 다.

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위장수사) (현행 제25조의4와 같음)

제25조의5(아동・청소년대상 디 제25조의6(아동・청소년대상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 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 용제한) -----

조의2부터 <u>제25조의4</u>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1. ~ 4. (생략)

<u>제25조의6</u>(국가경찰위원회와 국 회의 통제) (생 략)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
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 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25조의8(면책) (생 략)

<u>제25조의9</u>(수사 지원 및 교육) (생 략)

<u></u>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
회의 통제) (현행 제25조의6과
같음)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7
<u>/ 112022 </u>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9(면책) (현행 제25조의8
 과 같음)
<u>제25</u> 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현행 제25조의9와 같음)

-----제25조의5-----

<신 설>

제38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 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 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 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 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 해당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 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 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 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 범죄의 피해아동 · 청소년이 재 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 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 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

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

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

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

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

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

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5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 1. 제25조의8-----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 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한 자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